

(사)세계탈문화예술연맹 정관

(사)세계탈문화예술연맹 정관

(제정)2012.01.10. 정관 제1호
(일부개정)2015.02.11. 정관 제2호
(일부개정)2016.06.24. 정관 제3호
(일부개정)2020.06.23. 정관 제4호
(일부개정)2021.06.16. 정관 제5호
(일부개정)2022.01.26. 정관 제6호
(일부개정)2023.01.31. 정관 제7호
(일부개정)2024.01.31. 정관 제8호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① 이 법인은 「사단법인 세계탈문화예술연맹」 (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② 법인의 영문표기는 “IMACO (International Mask Arts & Culture Organization)”로 한다.

제2조(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경상북도 안동시 육사로 239(운흥동)에 둔다. <개정 2015.02.11.>

제3조(목적) 법인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탈과 그 문화예술 자료를 조사·연구하고 전시, 공연, 이벤트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인적교류 확대와 세계적인 탈 문화예술 가치를 확보한 안동과 한국을 홍보하며, 유네스코가 천명한 ‘문화 다양성 가치’ 실현으로 인류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1.31.>

제4조(활동 및 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탈과 그 문화예술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연구<개정 2024.01.31.>
2. 탈과 그 문화예술에 관련된 공연 퍼포먼스 연구, 기획 전시<개정 2024.01.31.>
3. 한국 및 국제적 탈 문화연구단체, 연구소 등과 인적네트워크 구축<개정 2024.01.31.>

4. 한국 및 국제 탈 관련 축제의 상호지원 및 창작활동 지원<개정 2024.01.31.>
5. 세계적인 탈과 탈문화예술의 메카 안동문화권 홍보<개정 2024.01.31.>
6. 탈 관련 인적·물적·학술적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 내 문화활동 진흥과 탈 관련 국제기구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개정 2024.01.31.>
7. UNESCO 인가 NGO 역할 수행 <신설 2016.06.24.>
8. 국제교류센터 기능 수행 <신설 2016.06.24.>
9. 세계탈문화예술전시관 설립·운영 <신설 2016.06.24.><개정 2024.01.31.>
10. 무형유산 보존과 계승, 발전을 위한 무형문화유산센터 운영 <신설 2016.06.24.><개정 2024.01.31.>
11. 각종 행사 보조, 안내를 위한 봉사단 운영 <신설 2016.06.24.>
12.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해외공연단 초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1.31.>
13.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 및 사업 <중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16.06.24.><중전의 제12호에서 이동 2024.01.31.>

제5조(수익사업)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동시의 협의를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01.31.>

제6조(이익의 제공) 법인은 목적사업으로 타인에게 제공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만, 그 실비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4.01.31.>

제2장 회원

제7조(회원의 자격) 법인의 회원은 법인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4. 제3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과 노력 <신설 2024.01.31.>

제10조(회원의 탈퇴) 1.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탈퇴의 효력은 탈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발생한다. <신설 2024.01.31.>

3. 회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반환 등 재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신설 2024.01.31.>

4. 회장은 회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의 사실을 효력이 발생한 즉시 모든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01.31.>

제11조(회원의 상벌)

1.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27조에 따른 이사회에서 참석한 이사의 3분의2 이상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02.11., 2024.01.31.>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개정 2015.02.11.>
2. 이사 10인 이상 20인 이내 (회장을 포함한다.) <개정

2016.06.24.,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16.06.24.,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0.06.23.)

3. 감사 2인 <개정 2015.02.11.,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6.06.24.,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0.06.23.)

제13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02.11., 2016.06.24., 2020.06.23.)

② 안동시 해당 부서국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개정 2015.02.11., 2021.06.16., 2023. 01.31.)

③ 대표권 있는 이사(회장)는 덕망 있는 이사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신설 2021.06.16.)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외부의 회계 또는 법률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02.11., 2016.06.24.,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1.06.16., 2024.01.31.)>

⑤ 회장은 임원 선임 후 경상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1.06.16.)

제14조(임원의 선임제한) ①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24.01.31.)

제15조(임원의 임기와 해임)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31.)

②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06.23.)

④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재적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행정·재정적 업무 및 국제 네트워크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02.11.>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사무국의 정관에 의거 설치·운영되는 기구의 운영 및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4.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경상북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6.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7.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신설 2024.01.31.>

제17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유고 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01.31.>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4.01.31.>

2. 파산 선고를 받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② 임원이 제1항의 단서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당연히 상실한다. <신설 2024.01.31.>

제4장 총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임시총회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개정 2020.06.23.>

②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5.02.11.>

③ 총회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임원 및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06.23., 2024.01.31.>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

장을 선출한다. <개정 2024.01.31.>

제22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총회의사록) 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회장과 출석한 이사 2명 이상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4.01.31.>

제2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5조(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4.01.31.>

제26조(회의) ①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②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과반수의 재적이사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참석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01.31.>
- ④ 이사회 소집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27조(의결 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 ② 이사는 그가 지명하는 대리인에게 의결권의 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은 서면으로 작성된 위임장을 회의 전에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과반수의 재적이사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의결 사항) 이사회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종전의 4호에서 이동 2020.06.23.>
4.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종전의 5호에서 이동 2020.06.23.>
5.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종전의 6호에서 이동 2020.06.23.>
6.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종전의 7호에서 이동 2020.06.23., 2024.01.31.>
7. 기타 법인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종전의 8호에서 이동 2020.06.23., 2024.01.31.>

제29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6장 위원회 및 사무국

제30조(자문위원회) ①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문적,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9인 이내의 자문위원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06.23.>

②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는 정관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사무국) ①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예산 편성 및 집행

2. 사업계획서 및 각종 보고서의 작성

3. 이사회 및 총회 의결사항의 집행 <개정 2015.02.11.>

4.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활동 및 사업과 기타 법인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4.01.31.>

② 사무국에는 사무처장 1명을 포함한 직원 약간 명을 둔다. <개정 2015.02.11., 2016.06.24., 2024.01.31.>

③ 사무처장은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직원으로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02.11., 2016.06.24., 2024.01.31.>

④ 사무국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6.06.24.>

⑤ 사무처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업무집행을 통할하고, 행사기획, 조정 및 운영에 참여한다. <중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6.06.24., 2024.01.31.>

⑥ 사무국의 조직, 분장업무, 직원의 임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중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6.06.24.>

제32조(센터) ① 법인은 탈 문화산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세계 탈 아카이브센터”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개

정 2020.06.23., 2024.01.31.)>

1. 세계 탈과 그 문화예술 자료 집적 <개정 2024.01.31.>
2. 탈을 활용한 창작 콘텐츠 개발사업 <개정 2024.01.31.>
3. 탈을 활용한 문화산업 프로그램 개발·운영 <개정 2024.01.31.>

제7장 재산과 회계

제33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자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2.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법인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1과 같다. <개정 2024.01.31.>

③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34조(경비의 충당)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출자금 및 보조금
2. 기타 단체 등의 후원금, 찬조금 및 기부금
3. 기본재산으로 부터의 과실
4. 사업수입금
5. 기타 수입금

제35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02.11.>

② 법인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기채 및 출연기관의 출연금 반납 처분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2.01.26.>

제36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의 제한) ① 법인의 재산은 법인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법인의 설립자

2. 법인의 임원

3. 법인의 설립자 또는 임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7조(장기차입의 제한) 법인이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5.02.11.>

제39조(예산 및 결산 등) ① 법인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법인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매 회계연도 세제잉여금은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40조(임원의 보수 등) ①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사무국 직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 임직원의 보수 및 여비지급 등에 관하여는 정관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42조(정관의 변경)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발의하여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에서 회원들의 과반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01.31.>

제43조(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에서 회원들의 과반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01.31.>

제44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잔여재산은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안동시에 귀속된다.

제45조(업무보고 등) ① 법인의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한다.

② 본 이사회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31.>

제46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회원들의 과반수 동의에 의해 규칙으로 정하거나 근로기준법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06.16., 2024.01.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의 사단설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추진위원) ① 설립당초의 회장은 안동시장으로 한다.

② 설립당초의 이사는 회장이 선임 또는 별도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설립 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회장	권영세	경상북도 안동시 경북대로 340 101동 305호 (태화동, 안동롯데캐슬아파트)	재임 기간
이사	권동순	경상북도 안동시 강남1길 98-23, 307동 502호 (정하동, 현진에버빌3차아파트)	3년
이사	김춘택	경상북도 안동시 송하2길 49-6 B동 306호 (송현동, 영호주택)	3년
이사	문형석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535번길 67, 724동 903호 (천전동, 비단마을영풍아파트)	3년
이사	박성용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170, 111동 502호 (연축동, 주공아파트)	3년
이사	이상현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중평길 39, 105동 1103호 (용상동, 안동세영리첼아파트)	3년
이사	이윤환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역전길 46-41	3년
감사	민덕기	경상북도 안동시 말구리길 33, 301동 206호 (태화동, 삼성아파트)	3년
감사	심중보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길 84-28, 106동 1207호 (송현동, 청구하이츠)	3년

제5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칙(2015.02.11.)

이 정관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06.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 및 재직 중인 사무총장은 이 규정에 의해 각각 선임 및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2020.06.23.)

이 정관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6.16.)

이 정관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01.26.)

이 정관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01.31.)

이 정관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01.31.)

이 정관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1]

기본재산목록

(단위: 원)

종 별 (용도별)	수 량 (평)	평 가 액	비 고
현금(예치금)	1	50,000,000	
계		50,000,000	